

# 『프랑스, 품질 및 산업 회복력에 기반한 히트 펌프 모델 승인 조건, 고시안, 2026년 4월』

2026. 05. 14.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HS 8418.61, HS 8415
통보국	프랑스	전년도 수출액 (천불)	3,029 (2025년)
작성기관	한국인정평가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프랑스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히트펌프의 품질 향상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히트펌프 모델 승인(Agrément) 제도를 도입하고, 유럽경제지역(EEA) 내 최종 조립 요건 및 특정 품질 인증 보유를 승인 조건으로 명시함
- (적용범위) 공기-물(Air-Water), 물-물(Water-Water), 지열-물(Ground-Water) 방식의 개별용(주택용) 히트펌프 모델 제조사,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ECP)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공인 인증 보유를 의무화하고, 일체형(Monobloc)은 냉매 회로 최종 조립 전체를, 분리형(Split)은 냉매 회로 하위조립품 중 최소 1개 이상을 EEA 내에서 최종 조립해야 함
- (인증정보)
  - (인증절차)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플랫폼을 통한 전자 신청 → 매월 15일 일괄 접수 → 1개월 내 심사 완료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유효기간) 일반 승인은 종료일이 없으나 사후 관리를 통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한시적 승인은 최대 1년(1회 연장 가능)임
  - (기타사항) 동일 모델이 EEA 내외 복수 제조사이트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ADEME는 필요 시 증빙자료의 프랑스어 번역본 제출 요청 및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일본)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Top Runner 제도를 통해 히트펌프 및 공조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효율 히트펌프 온수기 보급 지원과 냉매 관리 규제를 병행하고 있음

- (독일) 건물에너지법(GEG)을 기반으로 난방설비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활용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대상 히트펌프에 대해 효율 기준 및 제품 적합성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 DOE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및 ENERGY STAR 인증을 통해 히트펌프 효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IRA·Buy American 정책 등을 통해 일부 청정에너지 제품의 현지 생산·부품 요건을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음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본 규제는 기존 에너지효율 중심 규제에 생산·조립지 요건과 공급망 추적성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역외 생산 중심 기업에는 추가 인증, 현지 조립공정 확보, 제조사이트별 자료관리 및 추적성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국내 기업은 Heat Pump KEYMARK 등 유럽 인증 취득 가능성, EEA 내 조립공정 확보 여부, 제조사이트별 감사 자료 관리체계 및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시험비용 부담 증가) 기존 CE 인증만 보유한 기업은 추가 인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조사이트 감사자료, 누설시험, 압력 시험 및 추적성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한시적 승인 제도 활용 및 EEA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현지 OEM·ODM 기업과의 협력 검토 필요
  - (중견기업) 분리형 제품의 일부 하위조립품을 EEA 내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 생산공정 분산 전략 검토 필요
  - (대기업) 기존 유럽 생산거점 활용 또는 EEA 내 조립라인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공급망 현지화 및 규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4
III. 관련 인증 정보 .....	8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1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1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13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4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14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17
VI. 대응 방안 .....	18
참고 1 참고자료 .....	20
참고 2 규정(부속서) 원문 번역본 .....	21

##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Approval Conditions for Heat Pump Models Based on Quality and Industrial Resilience, Draft Order, April 2026		
	국문	프랑스, 품질 및 산업 회복력에 기반한 히트 펌프 모델 승인 조건, 고시안, 2026년 4월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프랑스	
채택(예정)일	미정	시행현황	제정 초안	
시행(예정)일	공포 다음 날 시행 예정	통보일(고시일)	미정	
HS Code	841861, 8415	의견수렴 마감일	2026.04.30	
총 수출액 (천불)	1,224,917 천불 (2025년 기준)	對별행국 수출액 (천불)	3,029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미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li> <li>▪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li> </ul>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트펌프 장비의 품질 향상,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및 관련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모델 승인 요건 규정</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ECP) 등 지정 인증 또는 동등 인증 보유 의무화</li> <li>▪ 체형(Monobloc)은 냉매 회로 전체, 분리형(Split)은 냉매 회로 하위 조립품 중 최소 1개 이상을 EEA 내에서 최종 조립하도록 규정</li> <li>▪ 제조공장 감사자료, 누설시험 자료, EPREL 정보 및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 제출 의무화</li> </ul>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규제는 기존 에너지효율 중심 규제에 EEA 내 최종 조립 요건, 제조사이트별 증빙자료 제출 및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성 요건을 결합한 제도로, 역외 생산 중심 기업에는 추가 인증·현지 조립·문서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li> </ul>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CE 인증만 보유한 기업은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LCP-HP 등 추가 인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며, EEA 내 조립공정 확보, 제조사이트별 감사자료 관리, 프랑스어 번역 및 현장 감사 대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업은 유럽 인증 취득 일정, EEA 내 조립 가능성, 제조사이트 별 기술문서 및 추적성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OEM-ODM 협력 또는 한시적 승인 제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본 고시(Arrêté)는 프랑스 에너지법(Code de l' énergie) 제L. 221-8조 및 관련 시행령(Décret)에 근거하여 히트펌프 모델 승인(Agrément)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됨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 및 디지털 주권부는 히트펌프(Heat Pump)의 품질 향상,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관련 환경영향 저감을 목적으로 히트펌프 모델 승인 조건을 규정하는 고시(Arrêté) 제정을 추진 중임
  - 본 제도는 제조사가 모델 승인을 위해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증빙서류를 규정함
  - 특히 유럽경제지역(EEA) 내 최종 조립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역내 생산기반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됨

### □ 규제 요지

- 히트펌프 모델 승인(Agrément) 제도 신설
  - 관련 시행령(decree)에 근거하여 일정 품질·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히트펌프 모델에 대해 공식 승인(agrément)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증빙체계 규정
  - 신청 유형별(일반 승인, 투자계획에 대한 의견요청, 한시적 승인 신청, 한시적 승인 갱신 신청)로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증빙서류를 제4조 및 부속서(Annexe)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품질 인증 및 역내 생산 요건 의무화
  - 모델 승인을 위해서는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ECP)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공인 인증을 보유해야 함
  - 일체형(monobloc)은 냉매 회로(circuit frigorifique)의 최종 조립이,

분리형(split)은 냉매 회로 하위조립품(sous-ensemble)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최종 조립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 적용대상

- HS 코드
  - 8418.61 (규제 대상인 공기/물, 물/물, 지열 방식 히트펌프의 주요 분류 항목)
  - 8415 (장비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공기조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 대상 품목은 공기/물(Air/Water), 물/물(Water/Water), 지열/물(Ground/Water) 방식의 개별용 히트펌프 모델에 적용됨
- 관련 주체는 해당 히트펌프의 제조사(Fabricant),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구매자 등이 포함됨

## □ 시행일

- 본 고시는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포된 다음 날부터 시행됨
  - 제공된 원문은 날짜와 번호 등이 공란([], XXX)으로 처리된 제정 단계의 문서이므로, 최종 채택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확정될 예정임

## 2

## 규제 세부 내용

### □ 적용대상 (제1조)

- 본 고시는 개별용 히트펌프 모델 중 공기/물(air/water), 물/물(water/water), 지열/물(ground/water) 방식의 개별용(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개별 세대의 난방·급탕·냉방용) 히트펌프 모델에 적용됨
- 적용 대상 주체는 해당 히트펌프의 제조사·수입업자·유통업자·구매자가 포함됨

### □ 승인 요건 규정 (제3조)

- 히트펌프 모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프랑스 산업·에너지 담당 부처로부터 공식 승인(agrément)\*을 받을 수 있음

\* 승인은 시행령(Décret) 제XX호 제1조에 근거하며, 동 시행령 및 관련 고시(Arrêté)에서 정한 품질 및 산업 회복력 기준을 충족한 모델에 부여되는 공식 승인을 의미함

- (인증요건) 해당 모델은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ECP) for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ydronic Heat Pumps(LCP-HP) 인증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 인증을 보유해야 함
  - (인증기관 요건) 해당 인증은 유럽경제지역(EEA) 내 설립되고, NF EN ISO/IEC 17065 기준에 따라 프랑스 인정위원회(Cofrac) 또는 EA(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다자간 협정 서명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creditation)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산업 회복력(생산·조립지) 기준
    - 일체형(Monobloc) 제품의 경우 냉매 회로(Circuit frigorifique)\*의 최종 조립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 냉매 회로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장치, 증발기 및 관련 배관·부속품으로 구성되는 폐쇄 시스템을 의미함

- 분리형(Split) 제품의 경우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하위 조립품(실내기 또는 실외기 등) 중 최소 1개 이상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함

**[참고] 히트펌프 모델 승인(Agrément)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및 목적: 프랑스 에너지법(Code de l' énergie) 제L221-8조에 따라 히트펌프의 품질 향상, 산업 회복력(생산지 기준) 강화 및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해 도입된 공식 승인제도임
- 제도상 효과: 본 승인을 획득한 모델에 한해 에너지절약인증제도(CEE)상의 가중치(Pondérations) 적용 및 관련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됨
- 승인 주체: 산업 및 에너지 담당 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 모델 목록이 정해지며,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제조사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함

**□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제4조 및 부속서)**

○ 일반 승인 신청(부속서 I)

- 일반 정보 및 증빙자료로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조사명, 히트펌프 모델명, 제품군, 브랜드 및 상업용 제품명
- 냉매종류, 히트펌프 유형, 구성형태(일체형/분리형), 사용용도(난방, 생활 온수, 냉방)
- 35°C 및 55°C 난방수 공급 조건에서의 정격 열출력(Prated)
- EPREL 모델 등록번호,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인증서 번호 및 유효기간
- 적격성 기준(EEA 내 최종 조립 수행)을 충족하는 조립공장 주소

- 에너지 성능자료로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EN 14825 표준에 따른 계절성능계수(SCOP)
- 위원회 규정(EU) 제813/2013호에 따른 계절 에너지효율(Etas, %, 35°C 및 55°C 난방수 공급 조건 기준)

- 품질 및 산업 회복력 관련 증빙자료로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LCP-HP 인증서 또는 동등한 인증서
-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LCP-HP 또는 동등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수행된 모든 제조 공장 감사 보고서
- 제조공장명, 정확한 소재지 주소(우편번호, 국가 등)

- 냉매 회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수행된 기밀성 검사 또는 압력시험 자료
- 동등 인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인증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
- 동일 모델이 EEA 내외 복수 제조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발급한 일련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서

○ 투자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 (한시적 승인 전 단계) (부속서 II)

- 한시적 승인(agrément transitoire) 신청하기 전, 히트펌프 제조사는 투자계획에 대한 ADEME의 사전 의견을 받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산업 프로젝트 설명자료)

- 제3조 승인요건 충족을 위한 산업 투자계획 설명서(신규 공장 설립, 생산시설 확장·개조, 생산라인 구축 등)
- 향후 생산시설의 위치정보(주소, 토지 고유 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 기존 공장 내 신규 생산라인 설치 시, 생산라인 배치도 및 기존 공장 사진
- (해당 시) 도입 예정인 산업 설비·기계·공구 목록

- (수행 일정 관련 자료)

-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주요 설비 발주 예정일
- 생산라인 가동(산업적 운영 개시) 예정일
- 건축허가, 설비 발주, 공사 완료, 시험·인증 취득 등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을 반영한 세부 이행 로드맵

- (경제성 및 재무 건전성 입증자료)

- 자기자본, 은행대출, 공공보조금 등 자금 출처별 투자자금 조달계획
- 제조사의 재무 건전성 증명 서류(최근 감사받은 연간 재무제표)

- (이행 의지 증빙자료)

- 토지 소유권 증서, 산업용 임대계약서 또는 매매·임대 계약서
- 건축허가 신청 접수증 또는 건축허가 승인서
- 주요 산업설비 관련 견적서 또는 발주서
- 은행 금융지원 약정서 또는 공공지원금 승인 결정서

○ **한시적 승인 신청(부속서 III)**

- 투자계획에 대한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의견을 받은 후 한시적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포함해야 함
  - ADEME로부터 수령한 투자계획 검토 의견서(부속서 II 결과물)
  - (모델 정보)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델의 부속서 I에 따른 일반 정보 및 에너지 성능 자료

○ **한시적 승인 갱신 신청(부속서 IV)**

- 한시적 승인 갱신 신청 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현황과 일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이행 실적 요약 보고서: 투자 계획의 진척 상황 및 설정된 마일스톤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보고서
  - 금융 지출 증빙: 전년도 투자 계획과 관련된 실제 지출 내역(송장, 은행 명세서, 회계사 확인서 등)
  - 물리적 진척도 증빙: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공사 현장 사진, 장비 인수증, 생산라인에 대한 인증기관의 감사 보고서 등)
  - 모델 정보 최신화: 모델 사양이나 에너지 성능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 업데이트

□ **자료 보완 및 현장검증 (제5조)**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히트펌프 모델 승인 심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 권한을 가짐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필요 시 제출자료의 프랑스어 공인번역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제출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한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인증 절차

### ○ 필수 인증 요건

- 모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인증을 보유해야 함
  - Heat Pump KEYMARK
  - NF PAC
  -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ECP) for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ydronic Heat Pumps(LCP-HP)
  - 상기 인증과 동등한 인증(유럽경제지역(EEA) 내에 설립되고, NF EN ISO/IEC 17065 기준에 따라 Cofrac 또는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EA) 다자간 협정 서명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creditation)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이어야 함)

### ○ 생산 및 조립 요건

- 히트펌프 모델은 인증 요건 외에도 생산·조립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체형(모노블록형) 제품의 경우, 냉매 회로의 최종 조립이 유럽 경제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분리형(스플릿형) 제품의 경우,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하위 조립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최종 조립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 신청 절차

- (신청 플랫폼) 신청은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운영하는 국가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 주기) 플랫폼에 제출된 서류는 매월 15일 12시에 일괄 접수 (Relève mensuelle)되어 심사가 진행됨

- (심사 기간) ADEME는 수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관계 부처는 월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결정 방식) 심사 기간 내 부처의 응답이 없는 경우 거부(Refus)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거부의 원칙이 적용됨

## □ 사후관리

- (현장 감사 및 검증) ADEME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제조 현장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사후 증빙자료 요청) 승인 발급 후 2년 동안 ADEME는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승인 모델 목록 관리) ADEME는 승인된 모델에 대해 고유 승인 번호(Numéros d'agrément)를 부여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목록을 전용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함

## □ 모델 식별 및 추적성 관련 사항

- 시리얼 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
  - 동일 모델이 둘 이상의 제조 사이트에서 조립되고 그중 하나가 EEA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발급한 추적성 증명서(attestation de traçabilité)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증명서는 시리얼 번호를 기반으로 EEA 내 생산 제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EPREL 모델 식별정보 제출
  - 신청 시 EU 에너지라벨링 프레임워크 규정(Regulation (EU) 2017/1369)에 따른 EPREL(European Product Database for Energy Labelling) 모델 참조번호 및 제조사 식별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인증 유효기간)

- 일반 승인은 별도의 종료일 언급은 없으나 사후 관리를 통해 승인 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한시적 승인은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이며, 제조사가 투자계획 이행 마일스톤 준수 증명을 통해 1회(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함

### ○ (번역문 제출) ADEME가 서류의 적정한 심사(bonne instruction)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어 공인 번역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 (서류 보존기간) 승인 후 2년간 ADEME의 추가 검증 요청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변경사항 발생 시) 모델 승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수정 사항은 ADEME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투자계획의 지연이나 실질적인 변경 사항도 보고 대상임

### ○ (위반 시 제재)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경 사항 미신고, 승인 요건 미충족 시 장관은 승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 적합성평가 기관

### ○ 인증은 유럽경제지역(EEA) 내에 설립되고, ISO/IEC 17065 기준에 따라 인정(creditation)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하여야 함

### ○ 해당 기관은 프랑스 인정위원회(Cofrac) 또는 EA 상호인정 체계에 따른 인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대표 인증기관 예시

- Eurovent Certita Certification(ECC)
- CETIAT(Centre Technique des Industries Aérauliques et Thermiques)

## 4

#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Top Runner 제도를 통해 히트펌프 및 공조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온수기(EcoCute)에 대한 효율등급 표시 및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플루오르화가스 배출억제법에 따라 냉매 관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 탈탄소화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 히트펌프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설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분야에서도 고효율 설비 보조금과 일본 내 기술개발·생산기반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2

#### 독일

- (현행 규정) 독일은 건물에너지법(GEG)을 기반으로 건물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난방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활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지역 단위 난방계획(Municipal Heating Planning)을 통해 지역 열공급망과 개별 난방설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가스·오일 보일러에 대한 기후 친화 연료 혼합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열공급망·재생에너지·건물 리노베이션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보급 정책 역시 단순 제품 효율규제를 넘어 지역 에너지 인프라 및 공급체계와 연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는 프랑스의 공급망·생산기반 중심 승인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나, 에너지안보 및 탈탄소 정책을 제품 보급 정책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 3

## 미국

- (현행 규정) 미국은 DOE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및 ENERGY STAR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히트펌프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AIM Act를 통해 저GWP 냉매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히트펌프 보조금·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는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확대 및 건물 전기화 정책을 추진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 및 Buy American 정책 등을 통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분야에서 미국산 부품 및 현지 최종조립 요건을 세액공제·보조금과 연계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시설 및 부품 조달 비중을 고려한 인센티브 정책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프랑스의 EEA 역내 조립요건과 유사하게 공급망 안정성 및 자국 제조기반 확보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

### 4

## EU

- (현행 규정) EU는 Ecodesign Directive 및 에너지라벨 규정(Regulation (EU) 2017/1369)에 따라 히트펌프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에너지라벨 표시의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제품에 대해 EPREL 등록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F-gas 규제를 통해 고GWP 냉매 사용 제한 및 단계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et-Zero Industry Act(NZIA)를 통해 히트펌프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하고 역내 제조역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 차원에서는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기반한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히트펌프에도 공급망·원산지·재활용성 등 제품 이력 정보 공개 요구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단순 에너지효율 규제를 넘어 공급망 회복력·역내 제조기반·제품 추적성 요소를 결합한 규제체제로 발전하는 추세로 평가됨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EU
상위 법·프레임	에너지법 L.221-8, 모델 승인령(Decree XX)	에너지절약법,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건물에너지법(GEG), 건물현대화법(GMG)	에너지정책보전법(EPCA), IRA, AIM Act	에코디자인 지침,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 규제부처	ADEME(환경에너지관리청), 산업·에너지부	경제산업성(METI)	BMWK(경제기후보호부), BAFA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유럽위원회(EC)
에너지효율 규제	KEYMARK, NF PAC, Eurovent(ECP)인증 필수	Top Runner(에너지소비효율 기준)	GEG 효율 기준 및 보조금 적합 목록	DOE MEPS(최소 효율), ENERGY STAR	에코디자인(SCOP/\$\eta_{s}\$) 기준
냉매 규제	EU F-gas 규정 준수 (신청 시 냉매 종류 명시)	플루오르화가스 배출억제법(GWP 관리)	F-gas 규정 및 천연냉매 전환 가속화	AIM Act 기반 HFC 단계적 감축	개정 F-gas 규정 (2024/573)적용
생산·조립 요건	EEA 내 최종 조립 의무(모노블록 전체, 스플릿 하위 1개 이상)	별도 규정 없음 (보조금 지원 시 우대)	별도 규정 없음	Domestic Content(자국산 비중) 논의	NZIA 기반 역내 제조 역량 40% 목표
추적성 관리	시리얼 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중복 생산 시 필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확대	지역 에너지계획 연계	Buy American(미국산 부품 비율)	디지털 제품 여권(DPP)도입 추진
유통 전 조치	ADEME 플랫폼 모델 승인 신청(매월 15일 접수)	Top Runner 목표 달성 신고	보조금 대상 모델 등록(BAFA)	DOE 인증 데이터베이스(CCMS) 등록	EPREL(에너지라벨 데이터베이스)등록
사후관리·감시	ADEME 현장 감사 및 2년간 추가 증빙 요청	시장 발체 시험 및 미달 시 공표	보조금 수령 데이터 검증	DOE/FTC 시장 감시 및 벌금	회원국 시장감독기관(MSA) 샘플링
필수 증빙문서	인증서, 감사보고서, 추적성 증명서	효율 자료, 시험성적서	에너지 효율 증명서, 기술문서	AHRI 인증서, 에너지 가이드 라벨	적합성 선언서(DoC), 기술문서(TF)
최근 개정 포인트	산업 회복력 기반 모델 승인제본격 시행	고효율 온수기(EcoCute) 보조금 확대	기술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 조정	저GWP 냉매 의무화 및 IRA 요건 변화	F-gas 쿼터 급감 및 NZIA 전략 기술 지정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 프랑스 정부는 히트펌프의 품질 향상, 산업 회복력 강화 및 환경영향 저감을 목적으로 히트펌프 모델 승인(agrément) 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는 단순한 안전/효율 규제를 넘어 생산지 요건(EEA 내 조립)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며, 승인 여부를 에너지절약인증(CEE) 보조금 가중치와도 연계함으로써 역외 생산 히트펌프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주요 요구사항

- (품질 인증 확보)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LCP-HP 인증 또는 동등 인증 확보 필요
- (역내 최종 조립 요건) 일체형(Monobloc) 제품은 냉매 회로 전체의 최종 조립이, 분리형(Split) 제품은 주요 하위 조립품 중 1개 이상의 최종 조립이 EEA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추적성 증명) 동일 모델이 EEA 내외 복수 제조사이트에서 생산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확인한 시리얼번호(Serial Number) 기반 추적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 - (생산 및 공급망 영향)

- 일체형(Monobloc) 제품은 냉매 회로 전체의 최종 조립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분리형(Split) 제품 역시 냉매 회로 하위조립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최종 조립이 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한국 등 역외 생산 중심 기업은 유럽 현지 조립공정 확보 또는 생산체계 조정 필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동일 모델이 EEA 내외의 복수 제조사이트에서 생산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성 증빙(attestation

de traçabilit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생산·물류·재고관리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 구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일 모델이 EEA 내의 복수 제조사이트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도 제조사이트별 감사자료 및 생산 관련 증빙을 개별적으로 관리·제출하여야 하므로, 문서관리 및 운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인증 및 행정적 부담)

- 본 승인제도는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ECP) 등 특정 유럽 인증체계를 승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CE 인증만 보유한 국내 기업에는 추가 인증 취득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제출자료 범위 역시 단순 성능시험 결과를 넘어 제조사이트 감사보고서, 냉매 회로 기밀성 검사(leak tests), 압력시험 자료, 제조공장 위치정보 및 추적성 자료 등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ADEME는 필요 시 프랑스어 공인 번역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한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있어 기술문서 번역 및 현장 대응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 (시장 및 경쟁 영향)

- 본 승인제도는 승인된 모델에 한하여 에너지절약인증제도(CEE)상의 가중치(Pondérations) 적용 등 정책적 혜택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승인 여부가 프랑스 시장 내 가격 경쟁력 및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승인 신청은 월 1회 정기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정 심사기간 내 정부의 회신이 없는 경우 ‘묵시적 거부(Refus implicite)’로 간주되는 구조가 적용됨에 따라 신규 제품 출시 일정 및 공급계획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결론 및 권고 사항

- 본 규제는 기존의 에너지효율 중심 기술규제에 산업 회복력(생산·조립지) 및 공급망 추적성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역외 생산 중심

제조사에는 상당한 대응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프랑스의 에너지절약인증제도(CEE)와 연계되어 승인 모델 중심으로 정책적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승인 미취득 제품은 시장 접근성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단순 제품 인증 확보를 넘어 유럽 현지 조립체계 운영 가능성, 생산공정 분산 전략,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Heat Pump KEYMARK 등 유럽 인증 확보 일정과 ADEME 승인 절차를 제품 개발 및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사이트별 기술문서·감사자료·시험자료 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중견 제조사의 경우 단독 대응보다는 유럽 현지 OEM·ODM 파트너십, 현지 조립 협력체계 구축 또는 유럽 인증 보유 기업과의 협업 전략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있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있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검토필요

2. 모노블록 및 스플릿 제품의 최종 조립 요건을 EEA 내로 한정하고, 승인 모델에 한하여 CEE 보조금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역외 생산제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생산 히트펌프의 프랑스 수출 시에는 차별 요소로 작용하나, EEA에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회사가 생산하는 히트펌프에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음)
4. 본 규제는 품질 향상, 환경보호 및 산업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EEA 내 최종 조립 요건, 제조사이트 감사 및 추적성 증명 등 공급망·생산지 요소를 승인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역외 제조사에 상당한 대응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생산지 기반 요건이 규제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이 존재함 (즉, 상위 규정의 목적에 따라 해당없음이 될 수 있음)
8. 동등 인증 인정 가능성이 규정상 존재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유럽 기반 인증체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비유럽 인증기관 또는 외국 인증 활용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대응 방안

##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전체 (규모 무관)	한시적 승인 활용 및 현지 협력 기반 시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생산기반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부속서 II 및 III에 따른 한시적 승인(agrément transitoire) 제도를 우선 활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 기반 확보 필요</li> <li>- EEA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현지 OEM/ODM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조립 요건(제3조) 충족 가능성 검토 필요</li> </ul>
	생산 공정 분산 및 인증 대응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매 회로 전체 이전 부담이 큰 경우 스플릿(Split) 제품의 경우 실내기 또는 실외기 등 냉매 회로 하위조립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최종 조립공정을 EEA 내에서 수행하는 방식 검토 필요</li> <li>- 제조사이트별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관리 체계 및 공급망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Heat Pump KEYMARK, NF PAC 등 주요 승인요건 관련 인증을 조기 확보하고 제조사이트 감사(Audit) 대응을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 및 프랑스어 기술문서 체계 사전 구축 필요</li> </ul>
	유럽 생산·공급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EA 내 생산·조립라인 구축 또는 기존 유럽 생산거점 활용을 통해 장기적인 공급망 현지화 전략 마련 필요</li> <li>- 동일 모델의 복수 생산체계 운영 시 인증기관과 연계 가능한 시리얼번호 기반 추적성 증명(Attestation de traçabilité)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ADEME의 월별 접수 일정(Relève mensuelle) 및 현장 감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과 상시 규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li> </ul>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참고자료** **참고자료**

연번	인용법령(국문)	인용법령(원어)
1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1369호(에너지라벨링 프레임워크 규정)	Règlement (UE) 2017/136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4 juillet 2017 établissant un cadre pour l'étiquetage énergétique
2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125/EC(에코디자인 지침)	Directive 2009/125/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concernant les exigences d'écoconception applicables aux dispositifs de chauffage des locaux et aux dispositifs de chauffage mixte
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765/2008호(인정 및 시장감시 규정)	Règlement n° 765/2008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9 juillet 2008 fixant les prescriptions relatives à l'accréditation et à la surveillance du marché pour la commercialisation des produits
4	프랑스 경제현대화법 제2008-776호 및 적합성평가 인정 관련 시행령 제2008-1401호	Loi n° 2008-776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 Décret n° 2008-1401 du 19 décembre 2008 relatif à l'accréditation et l'évaluation de conformité

## 참고 2

##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공화국

경제·재정·산업·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 ]년 [ ]월 [ ]일자 고시

프랑스, 품질 및 산업 회복력 기반 히트 펌프 모델 승인 조건, 고시안,

규정 번호(NOR) : [...]

**적용 대상:** 히트펌프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구매자

**목적:** 히트펌프 장비의 품질 향상,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및 관련 환경 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모델의 승인 조건을 정의하고, 제조업체가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본 고시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함.

**적용:** 본 고시는 품질 및 산업 회복력 측면에서의 히트펌프 모델 승인 신청 심사에 관한 시행령 제XX호의 이행을 위해 제정됨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은 다음을 참조하여:**

제품 시장출시와 관련된 인정(인정기관의 인증기관 인정) 및 시장감시 요건을 규정한 2008년 7월 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765/2008호,

에너지 라벨링 체계를 수립한 2017년 7월 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7/1369호,

난방기기 및 복합 난방기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125/EC,

경제 현대화에 관한 2008년 8월 4일 법률 제2008-776호(특히 제137조)

인정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시행령 제2008-1401호;

품질 및 산업 회복력 측면에서의 히트펌프 모델 승인 신청 심사에 관한 시행령 제XX호;

환경법 제L. 123-19-1조에 따라 XXX부터 YYY까지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XXX일자로 유럽 위원회에 발송된 통보 제XXX/FR호,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공기-물(Air/Eau), 물-물(Eau/Eau) 또는 지열-물(Sol/Eau) 방식의 개별형 히트펌프 모델에 적용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히트펌프(Pompe à chaleur)": 공간 난방기 및 복합 난방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제2009/125/EC 이행을 위해 제정된 2013년 8월 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813/2013호에서 정의한 '히트펌프 공간 난방 장치' 또는 '히트펌프 복합 난방 장치'를 의미한다.
2. "모델(Modèle)": 동일 제조업체의 히트펌프 단위제품 집합으로서, 일체형(Monobloc) 장비의 경우 최종 조립이 동일한 제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거나, 분리형(Split) 장비의 경우 하위 어셈블리의 최종 조립이 동일한 제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다음의 특성을 공통으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

냉매(Fluide frigorigène)

정격 열출력 또는 용량

히트펌프 유형(에너지원, 구동 에너지, 고온측 열원, 저온측 열원 등)

냉매 회로(Circuit frigorifique)

제빙 공정(Processus de dégivrage)

(해당되는 경우) 생활 온수(급탕) 탱크 용량

(해당되는 경우) 생활 온수 탱크의 열교환기

3. "제조업체(Fabricant)":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4. "냉매 회로(Circuit frigorifique)": 열역학 사이클을 보장하는 배관 및 부속품과 함께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폐쇄 시스템을 의미한다.

압축기(Compresseur)

응축기(Condenseur)

팽창장치(Détendeur)

증발기(Évaporateur)

및 열역학 사이클을 보장하는 배관 및 부속 장치

5. "냉매 회로 하위 어셈블리(Sous-ensemble du circuit frigorifique)": 열역학 사이클의 특정 기능(압축, 응축, 팽창, 증발)을 수행하는 냉매 회로의 부품 및 구성요소로 구성된 사전 조립된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하위 어셈블리는 실외기(압축기, 증발기, 팬 등 포함) 또는 실내기(응축기, 열교환기, 제어 장치 등 포함)일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속품(배관, 밸브, 센서, 제어 또는 조절 장치)을 포함한다.

6. "실내기(Unité intérieure)": 분리형(Split) 장비의 구성 요소로서, 최소한 응축기를 포함하며 공간 난방을 위해 건물 내부 온도를 조절하거나 생활 온수(급탕)를 생산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7. "실외기(Unité extérieure)": 분리형(Split) 장비의 구성 요소로서,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공기, 지열 또는 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최소한 압축기와 증발기를 수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장치는 냉매를 통해 실내기에 열을 전달한다.
8. "일체형(Monobloc) 장비": 냉동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공장에서 하나의 공통 지지대 위에 조립되어 단일 기기를 형성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9. "분리형(Split) 장비": 냉매 회로의 구성요소들이 공장에서 두 개의 지지대 위에 조립되어 하나의 기능적 기기를 형성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10. "제조 사업장(Site de fabrication)": 냉매 회로 또는 냉매 회로 하위 어셈블리(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11. "냉매 회로 최종 조립(Assemblage final du circuit frigorifique)": 냉매 회로의 모든 구성요소(개별적으로 포함되거나 사전에 조립된 구성 포함)를 조립하고 연결하여 완제품을 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12. "냉매 회로 하위 어셈블리 최종 조립(Assemblage final du sous-ensemble du circuit frigorifique)": 해당 냉매 회로 하위 어셈블리(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제품 구성을 위해 장착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 제3조 (승인 요건)

전술한 시행령(Décret) 제XX호 제1조에 명시된 승인은 히트펌프 모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1.인증요건 : 해당 모델은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 (ECP) for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ydronic Heat Pumps (LCP-HP)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인증은 유럽 경제 지역(EEA)에 소재하고 프랑스 인정 위원회(COFRAC)의 NF EN ISO/CEI 17065 표준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유럽 인정 기구 협력체(EA)의 다자간 협정 서명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2.제조(조립요건) : 일체형(Monobloc) 장비의 경우 냉매 회로의 최종 조립이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형(Split) 장비의 경우 냉매 회로 하위 조립품(어셈블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최종 조립이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 (승인 신청 서류)

제조업체는 승인 신청 대상이 되는 각 모델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여 증명하거나, 한시적 승인(Agrément transitoire)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전술한 시행령(Décret) 제XX호 제2조에 명시된 플랫폼에 제출하는 승인 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 및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의 경우: 본 고시 부속서 I에 규정된 사항
2.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한시적 승인 신청에 앞서 투자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의 경우: 본 고시 부속서 II에 규정된 사항
3.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한시적 승인 신청의 경우: 본 고시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사항
4.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한시적 승인 갱신 신청의 경우: 본 고시 부속서 IV에 규정된 사항

동일한 히트펌프 모델이 여러 제조 사업장에서 조립되거나, 냉매 회로의 하위 어셈블리 중 하나 이상이 여러 제조 사업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신청 서류에는 각 사업장에 대한 상기 정보 및 증빙자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 (프랑스어 번역 및 현장 실사)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상기 시행령 제XX호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플랫폼에 제출하는 증빙 서류에 대하여, 서류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된 프랑스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본 고시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출한 정보 및 증빙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 실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실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기업총국장(Le directeur général des entreprises)과 에너지기후총국장(la directrice générale de l'énergie et du climat)은 각자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본 고시의 집행을 담당하며, 본 고시는 프랑스 공화국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에 게재된다.

[ ]년 [ ]월 [ ]일 작성

롤랑 레스퀴르 (Roland LESCURE)

## 부속서

히트펌프 모델별 승인 신청 서류 내용

### I. 승인 신청서 (일반 절차)

신청 서류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목		요구되는 정보 또는 증빙 서류
<b>정보</b>	<b>히트펌프 모델 관련 일반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 (회사명, 사업자 정보)</li> <li>• 히트펌프 모델명</li> <li>• 히트펌프 제품군(시리즈)</li> <li>• 브랜드 및 상업용 제품명(모델 코드)</li> <li>• 냉매 종류</li> <li>• 히트펌프 유형 (공기-물, 물-물, 지열-물, 브라인-물)</li> <li>• 구성 형태 (일체형/분리형, monobloc/split)</li> <li>• 적용 용도 (난방, 생활 온수, 냉방)</li> <li>• 정격 열출력 (Prated) – 35°C 조건 (kW)</li> <li>• 정격 열출력 (Prated) – 55°C 조건 (kW)</li> <li>• EPREL 모델 등록번호 (EU 위임규정 811/2013 기준)</li> <li>•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인증서 번호 및 유효기간</li> <li>•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조립 공장 주소</li> </ul>
	<b>히트펌프 에너지 성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 및 중온 적용 시(해당되는 경우) EN 14825 표준 조건에 따라 산출된 계절별 성능 계수 (SCOP)</li> <li>• 저온(35°C) 및 중온(55°C) 적용 시(해당되는 경우) 2013년 8월 2일자 위원회 규정(EU) 제813/2013호에 따른 계절별 에너지 효율 (Eta<sub>s</sub>, %)</li> </ul>
<b>증빙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 for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ydronic Heat Pump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LCP-HP);</li> <li>• Heat Pump KEYMARK, NF PAC,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 for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ydronic Heat Pumps (LCP-H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 과정에서 실시된 모델 제조 사업장의 모든 실사(Audit)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현장 명칭</li> <li>○ 제조 시설의 정확한 주소 (제조 사업장의 정확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지자체명, 국가 포함);</li> <li>○ 냉매 회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된 기밀성 검사(누설 시험 (Contrôles d'étanchéité) 또는 가압 시험(Essais en pression) 결과</li> </ul> </li> <li>• 필요 시, Heat Pump KEYMARK, NF PAC 또는 Eurovent Certified Performance (LCP-HP) 인증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기타 모든 서류</li> <li>• 동일 모델이 2개의 제조 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EEA(유럽경제지역) 외부에 위치한 경우):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시리얼 번호)를 기반으로 인증기관이 발행한 추적성(Traceability) 증명서</li> </ul>

II. 투자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 (임시 승인 전 사전절차)

투자 계획 관련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목	요구되는 정보 또는 증빙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b>산업 프로젝트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고시 제3조의 조건에 따른 생산 활동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 산업 투자 설명서 (사업장 신설, 확장, 재건축, 생산 라인 도입 등 포함)</li> <li>• 향후 생산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 (주소, 지적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참조 정보)</li> <li>• 기존 사업장 내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향후 생산 라인의 배치도 및 기존 공장 사진</li> <li>• 해당되는 경우, 도입 예정인 산업 설비, 기계 및 공구 목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수행 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 또는 설비 발주 예정일</li> <li>• 산업 가동(생산 개시) 예정일</li> <li>• 중간 단계별 기술적·재무적 <b>**마일스톤(Jalons)**</b>이 상세히 기재된 일정표 (예: 건축 허가 취득, 기계 발주 승인, 건물 골조 완공 (Clos-couvert), 시험, 인증 취득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제성 및 재무 건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총 자금 조달 계획(자기 자본, 은행 대출, 신청한 공공 보조금 및 기타 자원 구분)</li> <li>• 제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감사받은 연간 재무제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이행 의지 증명 (Preuves d'engag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 여부와 진척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권 증명서, 산업용 임대계약서 또는 매매·임대 계약서(서명 완료된 것)</li> <li>○ 건축 허가 신청 접수증 또는 건축 허가 승인서</li> <li>○ 주요 산업 설비에 대한 견적서(서명된) 또는 구매주문서(발주서)</li> <li>○ 은행 자금 조달 승인서(대출 승인서) 또는 공공 보조금 지급 결정서</li> </ul> </li> </ul>

### III. 임시 승인(Agrément transitoire) 신청

투자 계획에 관한 환경·에너지 관리청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제출된 임시 승인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투자 계획에 대해 발급한 의견서
- 본 부속서 I항에 명시된 '히트펌프 모델 관련 일반 정보' 및 '히트펌프의 에너지 성능' 항목의 정보

### IV. 임시 승인 갱신 신청

임시 승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신청서에 포함된 예정 일정표상의 주요 단계(마일스톤)를 준수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자 계획의 진행 상황 및 일정 준수 여부를 기술한 요약 보고서
-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발생한 지출을 입증하는 비용 증빙 자료 (예: 지급 완료된 송장, 은행 출금 전표,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증명서 등)
- 프로젝트의 물리적 진행 상황을 입증하는 기타 자료(예: 공사 진행 사진, 산업 설비 인수 확인서, 생산라인 인증기관의 감사 보고서 등)
- 해당되는 경우, 본 부속서 I항의 '히트펌프 모델 관련 일반 정보' 및 '히트펌프의 에너지 성능'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